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사업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 →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이란?

## 저작권 신탁관리

저작권자의 권리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 연구보고서 "A"의 저작권을 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하였다.(포괄적 권리위탁)
- 신탁관리기관은 "A"의 저작권 관련하여 총괄적인 권한을 갖고 출판 계약, 이용허락 등을 대신 관리하였다.(특이사항 발생 시 저작자와 논의 후 결정)
- 신탁관리기관은 관리내역을 저작자에게 안내하고 1년에 1회 징수금을 분배하였다.
- 그 외에도 신탁관리기관은 "A" 관련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 시 법적 대응을 대리하였다.

# →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이란?

## |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관련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정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이란?

## |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관련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1항(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이란?

## 저작권 신탁관리기관/단체 종류

### 음악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어문저작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

### 영상저작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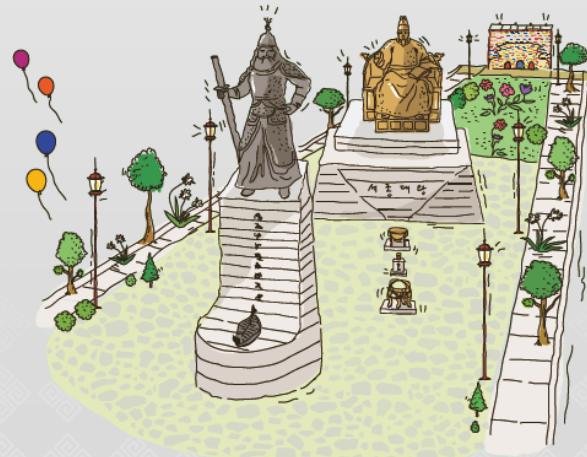
공공저작물 저작권 ➡ [한국문화정보원](#)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 받아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

☞ 한국문화정보원 저자권신탁관리업 허가 (2013.9.23~)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 ▶ 신탁 범위

- 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
- 신탁 권리 범위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상 권리**
  - ☞ 2차적저작물 작성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 저작물 범위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공공저작물) 전 분야
  - ☞ 어문, 음악, 미술(회화 또는 동상 등), 사진, SW, 데이터베이스 등
- 신탁 계약 기간 : 5년 단위로 갱신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 ▶ 신탁 장점

### 공공기관

- 자유이용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의 합리적 개방
- 공공성을 보유한 합리적인 저작권 관리 및 사용료 징수
- 상시 모니터링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법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저작권 관리

### 이용자

- 고품질의 공공저작물 이용
-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다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 신청 가능
-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이용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 | 관련근거(공공저작권 신탁)

###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 ▶ 관련근거(이용료 징수)

###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 1) 신탁하거나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지식재산(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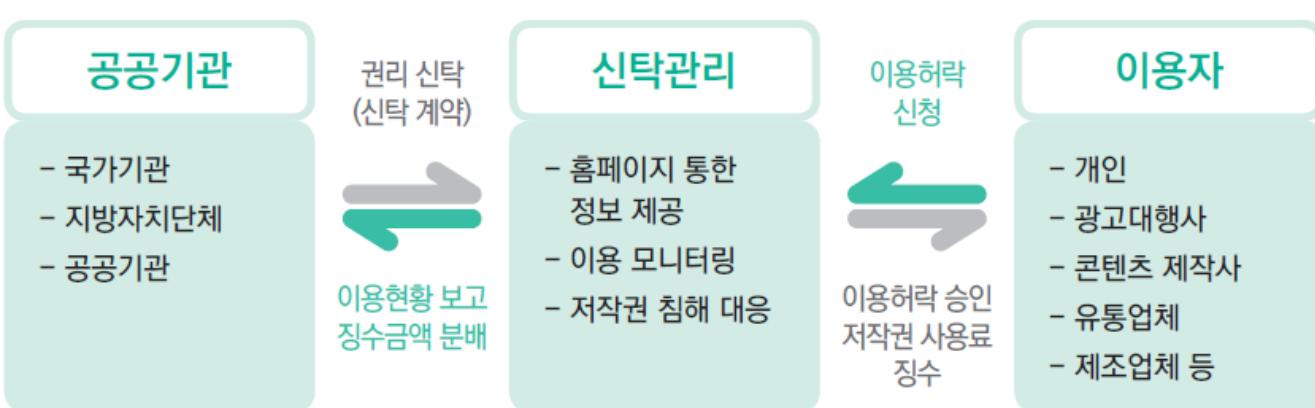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운영현황

## 사업 안내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운영현황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물 정보 제공(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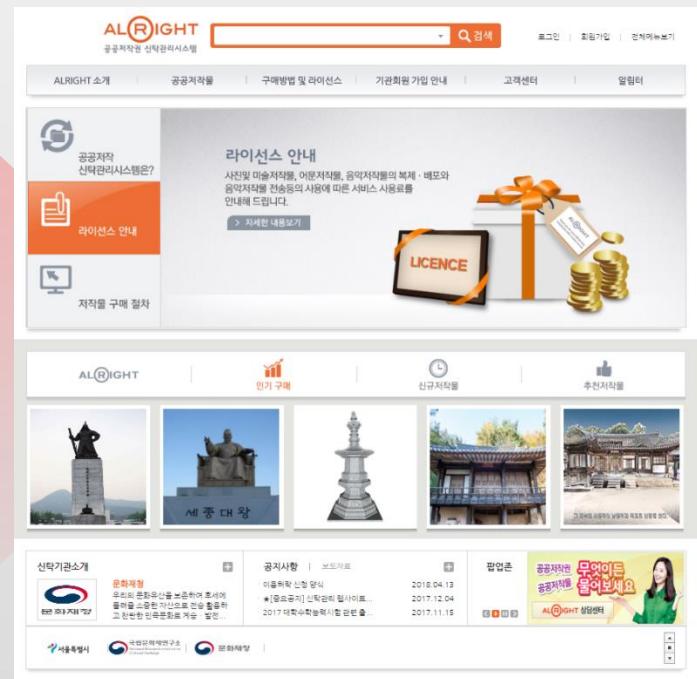
이용허락 신청 및 승인 안내(상시)

규정에 따른 정당한 비용 징수

이용현황 보고 및 분배

활용 및 불법이용 수시 모니터링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공동 법적 대응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운영현황

## 가입요건

- 기관이 신탁 대상 **공공저작물의 권리**를 전부 보유하여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저작물로써
-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저작물**

### <신탁 대상 저작물 예시>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 공공저작물의 이용 현황 및 성과를 확인, 파악해야 하는 경우
- 원작자(양도자, 기증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또는 원작자의 기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예 : 예술작품 등 미술/사진저작물)
- 제작 소요비에 따른 국고 보존을 위해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 : 3D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게임 등)
- 저작물 판매 수입이 기관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개방 시 기관 운영에 어려움 발생하는 경우  
(예 :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
- 연구결과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예 : 연구보고서)
- 불법 활용 또는 국외유출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예 : 캐릭터, 게임 등 콘텐츠)
- 변형 시 국민 혼란의 우려가 있어 선택적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자체 보급 예산 부족으로 출판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운영현황

## | 신탁 계약 절차



1. 기관에서 신탁의사 표명(1670-0052로 연락)
2.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상담
3. 신탁관리 대상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4. 계약서 초안 합의(특약 내용 등)
5. 계약서 공문 및 서면 송부(상호교환, 직인)
6. 대상 저작물 전달(기관→한국문화정보원)
7. 신탁관리시스템에 대상 저작물 소개자료 등록
8. 소개 및 이용허락, 저작권 관리 수행
9. 분기별 이용허락내용 안내 및 다음해 3월 내 징수금액 분배

### 계약서 내역

1. 특약사항
2. 공공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3.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4.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5.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
6.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  
(별첨) 신탁저작물 목록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운영현황

| 회원기관 : 서울특별시, 문화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 미술저작물

- 동상



## 소프트웨어

- 스마트시티 플랫폼



## 데이터베이스

- 문화재 3D 데이터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운영현황

## 이용허락 절차



신청서 접수

목적 및 이용범위 확인

사용료 등 안내

온·오프라인 제공

신청서에 따른 이용 확인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서		처리기간 (개인일 경우) 5일 (유일체외)
※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자명 (기관명)  <b>저작물 신탁 기관(ex. 서울특별시)</b> <small>(□여러건신청 : 총 건)</small>		
이 용 대 상 거 작 물 유 형	<input type="checkbox"/> 저작물 <input type="checkbox"/> 저작인접물 <input type="checkbox"/> 미디어비디오  <b>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일반적으로 1년 기준)</b>	
	<input type="checkbox"/> 저작물 <input type="checkbox"/> 저작인접물 <input type="checkbox"/> 미디어비디오  <b>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일반적으로 1년 기준)</b>	
사 용 기 간	<input type="checkbox"/>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일반적으로 1년 기준)	
	<input type="checkbox"/>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일반적으로 1년 기준)	
사 용 방 법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험파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b>전화번호</b>  <b>E-mail</b>  <b>첨부파일</b>  <b>기타</b>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험파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b>전화번호</b>  <b>E-mail</b>  <b>첨부파일</b>  <b>기타</b>	
주 소	<input type="checkbox"/> 성명 (법인인정)  <b>신정자 성명(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기관명 기재 후 담당자 기재)</b>  <input type="checkbox"/> 대인민족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b>기재</b>	
	<input type="checkbox"/> 성명 (법인인정)  <b>신정자 성명(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기관명 기재 후 담당자 기재)</b>  <input type="checkbox"/> 대인민족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b>기재</b>	
전 화 번 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b>전화번호</b>  <b>기재</b>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b>전화번호</b>  <b>기재</b>	
주 소	<input type="checkbox"/> 성명  <b>신정자 성명(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기관명 기재 후 담당자 기재)</b>  <input type="checkbox"/> 대인민족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b>기재</b>	
	<input type="checkbox"/> 성명  <b>신정자 성명(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 기관명 기재 후 담당자 기재)</b>  <input type="checkbox"/> 대인민족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b>기재</b>	
<small>한국문화정보원의 관리저작물을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품종저작물을 이용허락 협약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small>		
<small>년      월      일</small>		
<small>신청인 (인감 또는 직인날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서명)</small>		
<small>한국문화정보원 채우</small>		
<small>※ 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사업자 등록증 2. 대인인입증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별지 제5호 서식 복제지 (여러 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small>		

공공저작물 이용 계획서	
기 관 명 (개인일 경우) 신정자 등록번호	신청기관명  ex) 세종대왕 등장
처 작 물 명	  ※ 저작권 이용기간 : 통상 활용으로 제작된 2차 저작물의 이용기간
이 용 기 간	  ※ 저작권 이용기간 : 통상 활용으로 제작된 2차 저작물의 이용기간
이 용 계 획	<p style="color: red;">구체적으로 작성 (어떤 매체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 예정인지 등)</p>
주의 사항	<p>1. 이용허가는 신탁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사전 통보 및 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신탁저작물에 대한 이용허가는 받은 이용허가는 신탁저작물 자체를 배제 대상으로 하거나 후단 배포하는 것을 개인정보,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p>
년      월      일	신청인 (인감 또는 직인날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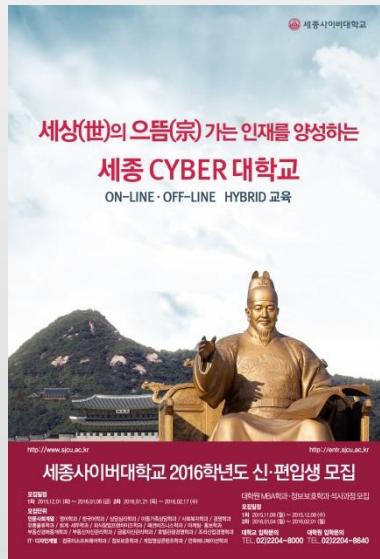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small>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이용 정보 권리 및 처치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시황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mall>	
<b>□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b>	
항 목	수집 목적
기업명, 사용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용하기 및 저작권 이용권
<small>* 보유기간 : 목적이 달성을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수칙에 따라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small>	
<small>*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저작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small>	
<b>⇒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b>	
<b>□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b>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해당 기관 신탁 저작물 활용내용 확인	기업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small>* 보유기간 : 목적이 달성을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수칙에 따라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small>	
<small>*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저작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small>	
<b>⇒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b>	
년      월      일	기관 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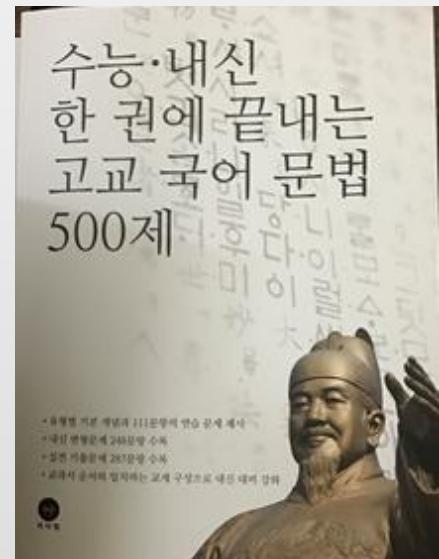
## ▶ 활용 사례



기업 홍보물



대학 신입생 모집 포스터



고교 학습 교재



기념품 제작

## → 관련 문의

### 강의내용/신탁 관련 문의

김민들레 책임 02-3153-2873 / mindl@kcisa.kr)